
**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**

2021. 1. 22

씨나인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2일
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현황 ('20년 12월말 기준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씨나인
대표자	이호철
정보통신 주요서비스 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오늘의 유머 / 약 13만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9000만원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이호철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모니터링 (2020 ~ 현재)
신고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게시물 및 댓글의 신고하기 클릭 -> 신고 분류 (불법촬영물등) 선택 -> 신고하기

스크랩 소스보기 + 출처보완 **게시물신고**

추천 비공감 **신고** 댓글

신고분류

노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타인에 대한 신고를 남용하시면 안됩니다.

- 광고(성인광고 포함)
- 불법촬영물**
- 음란
- 혐오
- 욕설
- 악플(공격적 발언, 비아냥)
- 차별적발언(지역감정조장, 노인비하, 남혐, 여혐 등)
- 분란조장(분란유도, 어그로, 분탕)
- 진목질(진분을 과시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적인 소외감을 유발하는 행위)
- 알베
- 여시/매갈/취마드
- 무분별한 물이행위(알베, 여시, 매갈)
- 게시판위반
- 출처보완 오남용
- 기타

신고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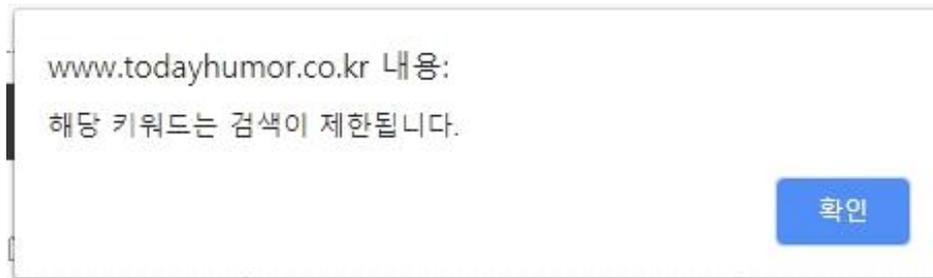
회원신고하기

적발이 반복될 경우 해당회원의 게시물 및 댓글 작성금지등의 제한조치

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관련 검색어 검색금지 실시 : 2020. 12월

[성착취] [몰카] [음란물] [불법촬영물]등의 키워드 검색금지 조치

지속적으로 관련 검색어 업데이트예정



-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등을 위한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: 2020년 ~ 현재

사이트 하단의 운영게시판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관한 의견등을 등록할수 있습니다



오유운영게시판

오유 운영게시판입니다.

오유 운영에 대한 건의와 오유의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제안, 오유의 문제점 지적 등 오유의 운영 전반에 대한 토론을 위한 게시판입니다. 추천수가 높아도 베스트로 옮겨지지 않습니다.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※ 대상기간 : `20.12.10. ~ 12.31.(신고건수 없음)

불법촬영물 등 신고·삭제 요청 및 처리결과															
※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동시행령 [별지서식] 또는 서식상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함															
※ 대상기간 : `20.12.10. ~ 12.31.(신고접수 기준)															
□ '20년 월별 불법촬영물등 신고·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															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	0	0	
		기관·단체												0	0
		소계												0	0
	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0	0
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		0	0	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0	0	
처리 결과	자체 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0	0	
	해당없음												0	0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0	0	
		해당없음											0	0	
		각하 등											0	0	
	소계												0	0	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0	0	
		허위영상물 등											0	0	
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0	0		

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

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- (관련 규정) 불법촬영물 및 성행위를 묘사한내용등의 게시물에 대해 당사자 및 방송통신위원회 외 아래 11개 단체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후 조치

기관·단체명
한국여성인권진흥원(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)
경기도여성가족재단
나무여성인권상담소
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
(사)부산성폭력상담소
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
십대여성인권센터
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
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
(사)제주YWCA
(사)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

- (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)

- 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촬영물등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삭제·접속차단을 한다. 단, 확인·판단이 어

려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.

- ② 해당 불법촬영물 등 게시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를 보낸다.
- ③ 신고자에게 해당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결과를 회신한다.

○ (기타 운영 관련 사항)

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·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3년이상 보관한다.
-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련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

4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이호철	황규철
부 서	운영	운영
직 책	대표	직원
지 정 일	2020. 12. 12.	2020. 12. 12.

5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 분	교육일	교육명	참석자	시간	교육기관
교육실시	2020-12-18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운영팀2명	2시간	자체교육
교육실시	2020-12-18	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	운영팀2명	1시간	자체교육